

성주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년 월 일
제출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상위법 근거에 의한 조례 정비를 통해 농기계 이용률 및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기계 임대사업소 심의위원회 구성 정비(제5조의3제2항)

나. 사용허가 기간 및 기준 개정(안 제8조)

- 1) 1농가당 1대(단, 동력엔진이 장착된 기종에 한해서 작업기를 포함 2대 가능)로 기준 완화
- 2) 타 지역에 거주하며 군 관내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의 임대 확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2) 입법예고 : 2022. 8. 11. ~ 9. 1.(21일간)
- 3) 규제심사 : 해당없음[미래지역활력과-844(2022. 2. 15.)호]
- 4) 성별영향평가분석 : 해당없음[가족지원과-7387(2022. 2. 15.)호]
- 5)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성주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2항 중 “기술개발과장”을 “기술보급과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1대”를 “1대(단, 동력 엔진이 장착된 기종에 한해서 작업기를 포함 2대 가능)”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두고 토지를보유”를 “두고 있는 농업인이나 성주군 관내에 농지를 경작”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의3(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p> <p>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u>기술개발과</u>장이 된다.</p> <p>③ (생략)</p> <p>제8조 (사용허가 기간 및 기준)</p> <p>① 농기계의 임대 기준은 사용자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기하기 위하여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임대하며, 1농가당 <u>1대</u>를 원칙으로 하고 사용허가 기간은 3일로 한다.</p> <p>②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성주군 관내에 주소를 <u>두고 토지를보유</u>하고 있는 농업인을 말한다.</p> <p>③ ~ ⑥ (생략)</p>	<p>제5조의3(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기술보급과장</u>-----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8조 (사용허가 기간 및 기준)</p> <p>① ----- ----- ----- --- <u>1대(단, 동력 엔진이 장착된 기종에 한해서</u> <u>작업기를 포함 2대 가능)</u>-----.</p> <p>② ----- ----- <u>두고 있는 농업인이나 성주군 관내에 농지를 경작</u>----- -----.</p> <p>③ ~ ⑥ (현행과 같음)</p>

관련법령 발췌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 (농업기계화촉진의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화 사업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임대사업시행기준)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에게도 임대하여야 한다.

성주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가. 재정수반요인

해당 없음

나. 미첨부 근거 규정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다. 미첨부 사유

「성주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비용 예상액은 없음

라.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농기계담당 최 부 광